### [서식 예]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# 소 장

원 고 1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2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3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 원고들의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#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○○. ○. ○.자 상속세 ○○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 ○○○는 소외 망 □□□의 처이고, 나머지 원고들은 위 ○○○의 자녀들 인바, 위 □□□가 1999. 10. 20. 사망함으로써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원고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1.5:1:1로 상속하였습니다.
- 2. 당시 원고 ○○○은 무지하고, 나머지 원고들은 아직 어렸던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문제를 간과한 채 지내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당초 1999. 11. 30. 경소외 ○○시장으로부터 위 ○○○의 사망자료를 접수하고 2000. 1. 20. 전산입력

된 국세청의 과세자료로써 위 ○○○의 사망 당시 달리 상속재산을 갖고 왕 왕 왕 왕 왕 학인한 다음 위 자료에 의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를 하였다. 2000. 9. 21.경에 이르러 2000. 6. 8.경 감사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망□□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음을 새로이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2000. 6. 8. 당시의 공시지가로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뒤 이를 기초로 상속세 ○○○원을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하였습니다.

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2000. 6. 8.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위부동산 시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하고 2000. 11. 1. 에 이르러 위부동산의 2000. 8. 20. 기준 시가감정을 새로이 한 다음 상속세를 감액 결정한 뒤원고들에게 새로이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.

- 3.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행한 위 2000. 4. 5.자 상 속세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한 처분입니다.
  - 즉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, 2000. 8. 20. 기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,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○○시 ○○동 212 전 312 및그 지상 주택 1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금 ○○○원과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☆☆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금○○○원을 합한 도합 금○○○원을 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.
- 4. 그러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위 □□□의 사망시인 1999. 10. 20.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인바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 9. 10. 20.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산출해 보면 별첨 감액요청금액의 계산명세와 같으므로, 그 금액을 초과하여 결정 고지한 피고의이건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.
- 5. 이에 원고들은 2000. 12. 20.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 2001. 5. 1. 기각을 결정받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제1호증

결정서

1. 갑제2호증의 1

조세심판 결정통지

1. 갑제2호증의 2

결정서

## 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00년 0월 0일

위원 고 1.00 (인)

2. ㅇ ㅇ ㅇ (인)

3. ㅇ ㅇ ㅇ (인)

| 관할법원          | ※ 아래(1)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소기간 | <b>※</b> 아래(2) 참조 <b>※</b>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        | 피처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청구인 |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               |
| 제출부수          |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<br>큼의 부본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법규 | 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           |
| 비 용          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<br>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불복방법<br>및 기 간 | 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<br>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<br>396조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